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

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,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하며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.

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〈자연환경보전 분야〉

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.

1970년대부터 공원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왔으며, 2006년 국립공원 관람료는 어른 1,600원, 청소년 · 학생 600원, 어린이 300원이었다.(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여부는 현재 미정)

환경 · 교통 ·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,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.

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,(http://eiass.go.kr)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하였으며,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해지고,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〈대기보전분야〉

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하며,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.

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2006년 신규인증차량 또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25%이상 ULEV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나, 소형승용차는 50%이상으로, 기타 전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하며, 경유 자동차는 일부 차종(경자동차, 소형승용차)만 EURO-4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전차종은 EURO-3기준을 적용하였으나,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, 2007년 신규인증차량 중 2.5t 초과 소형승용, 소형화물, 중형승용 · 화물자동차는 EURO-4 기준을 적용토록 대상을 확대하였다.

그리고 수도권 대기관리지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(대상 사업장:연간 질소산화물 30톤 이상, 황산화물 20톤 이상, 먼지 1.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).

〈상하수도 분야〉

수질검사를 강화하고,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.

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, 급수구역 유입부, 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확대하고 수질검사 지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고, 2009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반드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된다.

〈수질 분야〉

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, 폐수를

실시간 분석 · 모니터링하는 폐수 TMS제도가 도입된다.

건강보호 항목이 종전 9개에서 17개로 확대되고, 분원성 대장균군과 클로로필-a 기준도 추가된다(추가되는 항목 : 사염화탄소, 1,2-디클로로에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디클로로메탄, 벤젠, 클로로포름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, 안티몬).

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추가하여 어류, 저서생물, 서식지 등을 통해 수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일일 2,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,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(TMS:Tele Monitoring System)을 도입하여야 한다.

〈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비교표〉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**국립공원입장료 폐지**	○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· 어른(1,600원) · 청소년 · 학생(600원) · 어린이(300원)	○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	자연공원법 제37조 (2007.1)	자연자원과 ☎ (02)2110-6755
2	**5.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**	○ 5.5톤이상 자동차는 무부하 급가속방법 적용 · 검사수수료 : 18,000원 * 5.5톤이하 자동차만 부하검사 적용	○ 자동차 정밀검사시 5.5톤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 적용 · 검사수수료 : 30,000원	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,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5 (2007.7)	교통환경 관리과 ☎ (02)2110-6859
3	**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**	〈신 설〉	○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는 위반내역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수도법 제18조의2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4	**수돗물 품질보고서발간 · 제공**	〈신 설〉	○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 · 제공하여야 함	수도법 제19조의3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5	**급수설비 관리 강화**	〈신 설〉	○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 ○ 급수설비 노후, 수질기준 초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소유자에게 시설개선 권고 가능 ○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가능	수도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6	**수도시설 위생상조치 강화**	○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·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○ 소독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 외에 급수관 상태검사 및 세척 · 갱생 · 교체 의무를 추가함	수도법 제21조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7	**먹는물 수질검사 강화**	○ 수돗물 수질검사 시료채취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, 배수지, 가압장, 급 · 배	○ 정수장, 주배수지 전후, 급수구역 유입부, 급수구역내 가압장 유출부,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,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, 급수구역 관말, 수도꼭	수도법 제19조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
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		수관, 저수조,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	지로 명확히 함		
8	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국가자격 신설	〈신 설〉	○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	수도법 제17조의4 (2007.1)	수도정책과 ☎ (02)2110-6876
9	화장품 유리병 재활용(분리배출) 대상에 포함	○ 화장품 유리병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분류	○ 재활용의무대상(EPR 대상)으로 변경 -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2007.1)	자원재활용과 ☎ (02)2110-6955
10	대기환경기준 강화	-	○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중 일부 항목(NO_2, PM_{10})의 환경기준 강화	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(2007.1)	대기정책과 ☎ (02)2110-6782
11	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	○ 건강보호항목 : 중금속 중심으로 9개 ○ 대장균군은 총대장균군으로만 측정 〈신 설〉	○ 벤젠 등 8개 유해물질을 건강보호항목에 추가하여 총 17개 항목으로 확대 ○ 대장균군 항목에 분원성대장균군 추가 ○ 수질 등급별 생물지표종 도입	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(2006.12)	수질정책과 ☎ (02)2110-6623
12	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	○ 제품(기기 · 자재 포함)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	○ 제품, 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도인증대상에 추가 - 예: 세탁, 인쇄 등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(2007.7)	환경경제과 ☎ (02)2110-6677
13	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	○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 · 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 ○ 평가 · 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	○ 신청서의 접수 · 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 · 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(2007.7 예정)	환경기술과 ☎ (02)2110-6720
14	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독성평가항목 추가	○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급성독성, 유전독성, 분해성 시험성적서 제출	○ 수생생태독성(어류급성독성, 물벼룩급성독성, 조류급성독성) 시험성적서 3개 항목 추가	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(2007. 1)	화학물질안전과 ☎ (02)2110-7958
15	환경영향평가제도 획기적 개선	○ 환경 · 교통 ·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, 재해, 인구환경 등 영향평가 시행	○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, 교통, 재해, 인구영향평가제도 삭제 ○ 간이평가절차 도입,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평가 관련정보 제공	환경영향평가법 (2007.1)	환경평가과 ☎ (02)2110-7625
16	제작자동차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	○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(OBD) 부착 대상 - 소형 휘발유 자동차는 30%이상 -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소형 경유차 100%	○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(OBD) 부착 대상 확대 - 모든 휘발유 자동차 100% 부착 - 경 · 소형 경유 승용자동차 100% 부착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(2007.1)	교통환경기획과 ☎ (02)2110-6806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7	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	○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– 휘발유 자동차는 2006년 신규인증신청차량만 ULEV 기준 적용 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25% 이상 적용 –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LEV 기준 적용 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'06~'07년 6월기간중 출고되는 차량 – 경유자동차는 경 · 소형승용차만 EURO–4 기준 적용	○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– 휘발유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 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50%이상 적용 –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 ※ 단, 소형승용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 – 경유자동차 EURO–4 기준 적용대상을 2007년 신규인증신청차량중 소형승용(2.5t초과), 소형화물, 중형승용 · 화물자동차로 확대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 (2007.1.1)	교통환경기획과 ☎ (02)2110–6806
18	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	〈신 설〉	○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결함시정(보증수리)을 실시한 경우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○ 부품의 결함건수 및 결함비율이 일정요건에 도달하면 자발적 내지 강제적으로 리콜실시	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3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, 44조 (2007.7.1)	교통환경관리과 ☎ (02)2110–6861
19	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	〈신 설〉	○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물질을 관리	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 내지 22조 (2007.7.1)	대기총량제도과 ☎ (02)2110–7928
20	대기배출부과금 산정방식 개선 및 보고주기 완화	○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사업자는 예정 및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○ 지자체는 배출부과금 부과실적(월1회) 및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(연4회) 제출	○ 사업자의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고, 기본배출부과금은 확정배출량에만 근거하여 부과 ○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보고주기를 완화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처분 현황을 반기 1회 제출	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(2007.1.1)	대기관리과 ☎ (02)2110–6688
21	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	–	○ 반도체 제조시설,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(RDF)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(RPF) 등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의 새로이 설정 시행 ○ 시멘트제품 제조시설의 염화수소, 선박 제조시설 등의 도장시설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(THC) 배출허용기준 완화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 (2007.7.1)	대기관리과 ☎ (02)2110–6789
22	폐수배출업소 24시간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 시행	〈신 설〉	○ 일일 2000㎥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원격감시를 시행	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(2006.7)	산업폐수과 ☎ (02)2110–6845
23	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	〈신 설〉	○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합성수지포장재연차별줄이기 대상에서 제외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(2007.8)	자원순환정책과 ☎ (02)2110–6919